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항만용역업	우림엔지니어링	변옥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역길 30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백월산업 주식회사	이성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8, 2층 201호
선박수리업	엠티씨주식회사	정필화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110
선박수리업 선용품공급업	파이시스마리코(주)	편혜숙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옥산길 298
선용품공급업	지에이치에스	김명희	경남 거제시 옥포로 2길 41 3층
선용품공급업	씨아이엘	류희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길8, 3층 302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우림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백월산업 주식회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엠티씨주식회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선용품공급업	파이사파리(주)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지에이치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용품공급업	씨아이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참조)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다. 다만,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을 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전화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5. 의견제출 방법

-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 합동청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10층)
  - 팩스 : 055-245-1503
  - 정보통신망 : tmdgus5326@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전화 055-981-5121)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청에서 허가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 6.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제2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붙임 제3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제4호 서식 참조)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7. 의견제출 기한 : 2025. 2. 19.(수)까지

##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나.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55-981-5121, 담당 정승현)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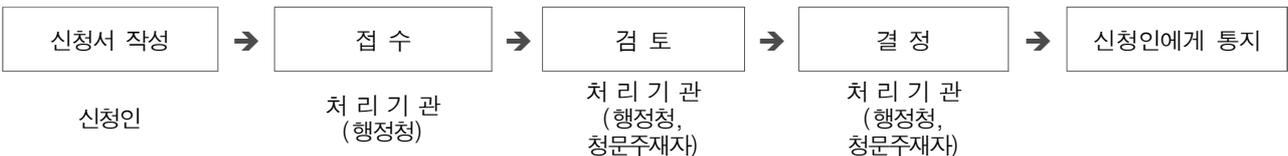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붙임 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선정  
[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 ( [ ] 해임 [ ] 변경) 통지서  
[ ] 대리인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